

##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건설사업자(폐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개찰 최고 순위 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조사 실시”

-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는 공사입니다.

####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sup>①</sup>기술능력, <sup>②</sup>자본금, <sup>③</sup>시설·장비 등) 충족 여부

-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 1.1. 공 사 명 : 국도37호선 금산 중도오거리 등 2개소 사고찾은곳 개선공사
-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6개월)
- 1.5. 추정금액 : 금343,259,000 원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              | 관급자재          |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 금343,259,000원 | 금198,550,000원 | 금180,500,000원 | 금18,050,000원 | 금144,709,000원 |

※ 관급자설치 관급액 : 금55,433,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 업 종   | 추정금액(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
| 토목공사업 | 금343,259,000원(100.00%) | 금198,550,000원(100.00%) |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             |              |             |              |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소 계          |
| 금1,350,421원 | 금1,784,284원  | 금177,445원   | 금863,969원    |
| 금2,845,144원 | 금31,790,797원 | 금6,929,761원 | 금45,741,821원 |

-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1.7.2. 본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기간 : 2026. 9. 17. 23:00 ~ 2026. 9. 23. 10:00
-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업 100%)”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 【붙임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0.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2.11.1. 공사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통해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2.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2.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8】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 열람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양우영 주무관(043-540-2333)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5.1. 입찰보증금

5.1.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2.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입찰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의 범위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예정가격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9.30.)」이 적용됩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 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단,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9.1.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0.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1.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같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 13.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6】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3.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13.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 14.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4.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 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준비자료 >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2,3】
- ② 사업자 등록증
- ③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 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⑪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 ⑭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14.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 15. 기타사항

-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장애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15.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5.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양우영(043-540-2333)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민준(043-540-2319)

2026년 9월 1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043-540-2312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21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91 / Fax. 044-201-5506



국토교통부

【붙임1】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  
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 목                                                                                                                              | 수집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br>국가기술자격증 번호,<br>건설기술인 등록번호,<br>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br>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br>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br>얼굴 등 사진 촬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br>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br>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br>위한 사실조사<br><br>*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br>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3년   |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  
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년 \_\_월 \_\_일  
(성명) (인)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                                   |
|-------|---------------|-----------------------------------|
| 공 사 명 |               | 국도○○호선 ○○공사                       |
| 계약상대자 | 상 호 및 대 표 자   | (주)○○ 대표이사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영 업 소 소 재 지   |                                   |
|       | 전 화 번 호       |                                   |
| 계약내용  | 계 약 금 액       | 일금 ○억○천○백○만○천○백○십원정(W123,456,789) |
|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 일금 ○억○천○백○만○천○백○십원정(W123,456,789) |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급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붙임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